

# 2023년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의료기술주사보)을 경력경쟁 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7일  
인사혁신처장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 급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의학영상물 판독 등 관련 업무	의료기술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의학영상물 판독 등 관련 업무 의료기술주사보 (일반임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무원 재해보상심의 관련 의학영상물 판독·분석 및 심의회 운영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료영상물(MRI, CT, X-RAY, 초음파 등) 자료의 판독·분석 및 보완요구</li><li>- 의무기록지(진단서, 경과기록지 등) 검토 및 대조</li><li>-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접수현황 적정성 및 오류사항 검토</li><li>- 재해보상심의회 안건서류 정리 등 심의회 운영</li><li>- 기타 재해보상심사와 관련한 업무 전반</li></ul></li></ul>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22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382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47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 4. 응시자격 요건

### □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아래 분야별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직위	채용 자격 요건	
<b>의료영상물 감독 등 관련 업무</b> (의료기술주사보)	<b>경 력</b>	①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b>[관련분야 경력]</b>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지자체 등 포함) 의료·보건 분야경력(강의경력 제외)
	<b>학 위</b>	①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b>[관련분야 학위(과)]</b> 방사선과, 영상의학과,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보건의료 행정학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b>[관련분야 경력]</b>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지자체 등 포함) 의료·보건 분야경력(강의경력 제외)

- 응시자격 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등은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3.6.27.)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 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 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2023. 7. 7. 기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강의경력 제외) 우대
- 공공(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 '의료 관련 영상물 판독 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
  - ※ 인정범위 : 대표자의 직인이 있는 경력증명서('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반드시 명시)만 인정
- 공공(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 '의무기록지 서류검토 경력'을 보유한 자
  - ※ 인정범위 : 대표자의 직인이 있는 경력증명서('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반드시 명시)만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자격구분	방사선관리기술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선사

  - ※ 복수의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상위 구분 자격증 1개만 인정(구분별 차등배점)

- 우대요건 기본사항
  -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을 제외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학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7.7.)**을 기준으로 판단함

##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
    - 의료기술주사보(일반임기제 7급상당) : 30,268~63,074천원(기타 수당 별도)
-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6.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9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8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분야 근무경력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우 대 사 항 (우대 요건 참고)	관련분야 근무경력, 의료관련 영상물·의무기록지 등 판독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및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역량평가 실시** : 면접 시 전문성 평가 자료로 활용

**【역량평가】 개조식 보고서 및 약술형 경험기술 작성**

■ **평가목적**: 관련분야 전문지식 등 평가

■ **평가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응시대상) \* 면접 당일 개별면접 前 실시

####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할 때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7. 시험일정

구분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의료영상물 판독 등 관련 업무	'23.6.27.(화) ~ 7.7.(금)	'23.7.4.(화) ~ 7.7.(금)	'23.7.19.(수) (예정)	'23.7.24.(월) (예정)	'23.8.4.(금)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에 게재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송부** ※ 코로나19로 인해 우편접수만 실시
  - 접수기간 : 2023. 7. 4.(화) ~ 2023. 7. 7.(금) 18: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 등기접수방법
    - 접 수 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채용담당자  
우(30128) 세종시 정부2청사로13(나성동) 정부세종청사 17-2동 8층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증**”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제출서류**

구분	내용	서식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7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a href="http://www.e-revenuestamp.or.kr">www.e-revenuestamp.or.kr</a> ) 등을 통해 발급 ※ 응시수수료 면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별지 제1호
2. 응시자 기본서류 1부	-	별지 제2호
3. 경력채용 이력서 1부	○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별지 제3호
4. 자기소개서 1부	○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 A4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 A4 3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제6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8.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
9. 졸업증명서 (학위증)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	-
10.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프리랜서) 정확히 기재 ※ 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 첨부(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등) - 폐업회사는 아래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 -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 담당자 연락처 및 e-mail 반드시 기재	프리랜서, 폐업회사 등은 별도 증빙 필요
11. 공인자격증 사본 1부	○ 방사선관리기술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선사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도 가능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 번역본을 함께 첨부



## < 폐업회사 경력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희망한 경우에만 반환**)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및 학위 관련 사항 :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044-201-8107)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인사조직과(☎ 044-201-8029)

**별첨**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채용예정 직급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의료기술주사보(일반임기제)
<b>주요업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재해보상심의 관련 의료영상물 판독·분석 및 심의회 운영 지원</li> <li>- 의료영상물(MRI, CT, X-RAY, 초음파 등) 자료의 판독·분석 및 보완 요구</li> <li>- 의무기록지(진단서, 경과기록지 등) 검토 및 대조</li> <li>-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접수 현황 적정성 및 오류사항 검토</li> <li>- 재해보상심의회 안건서류 정리 등 심의회 운영</li> <li>- 기타 재해보상심사와 관련한 업무 전반</li> </ul>	
<b>필요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통역량)</b>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li> <li>○ <b>(직급별 역량)</b>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li> <li>○ <b>(직렬별 역량)</b>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li> </ul>	
<b>필요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영상물의 판독 등에 관한 지식</li> <li>○ 의무기록지 검토 및 대조 관한 지식</li> <li>○ 보건 및 의료분야의 기본적인 실무적·이론적 지식</li> </ul>	
<b>응시자격요건</b>	<b>직무분야</b>	
	<b>경력 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li> <li>○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li> <li>○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지자체 등 포함) 의료·보건보건 분야 경력(강의경력 제외)</li> </ul>
<b>학위 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과)] 방사선과, 영상의학과,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관련분야 경력]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지자체 등 포함) 의료·보건보건 분야 경력(강의경력 제외)</li> </ul>	
<b>우대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강의경력 제외)이 길수록 우대</li> <li>○ 공공(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 의료 관련 영상물 판독 경험이 있는 자</li> <li>○ 공공(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 의무기록지 서류 검토경험이 있는 자</li> <li>○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 ※ 방사선관리기술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선사</li> </ul>	

<별지 제1호>

# 응시원서

본인은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국적명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격 요건	경력			학위	
	<input type="checkbox"/> 경력①	<input type="checkbox"/> 경력②	<input type="checkbox"/> 경력③	<input type="checkbox"/> 학위①	<input type="checkbox"/> 학위②
주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 응시표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요건	
성명	(한글)	(한자)		
2023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기재(예 : 일반임기제 7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 의학영상물 판독 등 관련 업무)
3. 응시요건 : 공고문의 4.응시자격을 참고하여 응시요건 중 **반드시 택일하여 표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경력 요건(공무원경력, 민간경력) 착오, 미 선택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선택 오류사항 예시>

1. 중복선택  
 - 응시요건을 택1 하지 않고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자격 요건	경력			학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력1	<input type="checkbox"/> 경력2	<input type="checkbox"/> 경력3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위1	<input type="checkbox"/> 학위2

2. 미 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자격 요건	경력			학위	
	<input type="checkbox"/> 경력1	<input type="checkbox"/> 경력2	<input type="checkbox"/> 경력3	<input type="checkbox"/> 학위1	<input type="checkbox"/> 학위2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선택
7.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금액 7천원(일반임기제 7급)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 응 시 자 기 본 서 류

<b>응시직급(분야)</b>		<b>성 명</b>	
<b>응시자격 요건</b>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 그대로 기재		

###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유무
1. 경력채용 이력서(필수) <span style="float: right;">* 별지 제3호 서식</span>	○
2. 자기소개서(필수) <span style="float: right;">* 별지 제4호 서식</span>	○
3. 직무수행계획서(필수) <span style="float: right;">* 별지 제5호 서식</span>	○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필수) <span style="float: right;">* 별지 제6호 서식</span>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span style="float: right;">* 별지 제7호 서식</span>	○
6. 주민등록초본(필수) <span style="float: right;">*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포함</span>	○
7. 관련 학위 증빙서류(필수) <span style="float: right;">*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등)</span>	○
8. 관련 경력 증빙서류(필수) <span style="float: right;">* 업무 및 근무기간, 발급자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반드시 명시</span>	○
9. 공인자격증 서류 <span style="float: right;">* 우대요건 공인자격증(사본)만 제출</span>	○

-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사항 등 미인정**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계로 집어 제출)



## 경력채용이력서 작성요령

▶ 『경력채용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하는 직급을 기재 (예 : 일반임기제 7급)
- ③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분야 기재 (예 : 의학영상물 판독 등 관련 업무)
- ④ 응시요건 : 공고문의 4.응시자격을 참고하여 응시요건 중 반드시 택일하여 표시

### 나.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① 경력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에 필요한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에 부합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 경력증명서에는 **업무 및 근무기간, 발급자 연락처(전화번호, e-mail / 진위여부 확인용)가 명시되어야 함**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② 학위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학교명 기입 금지
- ③ 공인자격증 : 우대요건 관련 공인자격증 기입

라. 이력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작성자 확인란만 자필로 작성합니다.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성명	
◎ 자기소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작성요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li><li>-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li><li>-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li><li>-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li></ul></li><li>■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li></ul></li><li>■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li></ul>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2023. . . . 작 성 자 : (서명)			

##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성명	
◎ 직무수행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작성요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li><li>-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li><li>-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li><li>-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li></ul></li> <li>■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li></ul></li> <li>■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li></ul>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2023. . . 작성자 : (서명)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별지 제7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